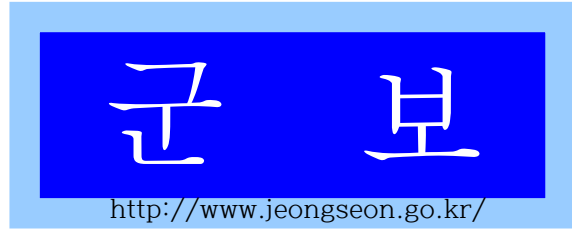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35호 2023. 7. 19.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60호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832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2
- 정선군 공고 제2023-845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4
- 정선군 공고 제2023-856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6
- 정선군 공고 제2023-858호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7
- 정선군 공고 제2023-859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9

- 정선군 공고 제2023-875호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 정선군 공고 제2023-887호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60호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정선군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정 선 군 수

1. 사업명 :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목 적 : 농산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거점지로서 원활한 문화교류활동·역량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3.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06-1번지 일원
4. 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2,800백만원, 지방비 1,700백만원)
5. 주요사업내용
 - 가. 기초생활기반 : 아우라지 센터 조성 등.
 - 나. 지역역량강화 :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7.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832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군 고시 제2010-96호(2010. 7. 9.)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삼탄수질정화시설)을 증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지설) 결정(변경)(안)”을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정 선 군 수

1.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삼탄(강내수) 수질오염방지지설 증설
- 범 위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1번지 일원
- 면 적 : 19,703㎡ → 20,933㎡ (증 1,230㎡)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시 행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 7. 14. ~ 2023 7. 28.(게재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공람장소 비치)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수질오염방지지설) 결정(변경)(안) 도서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

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비고
	리	지번			기정	증감	변경		
1	고한읍 고한리	3-1	대	5,677	2,061	-	2,061	한국광해광업공단	
2	고한읍 고한리	5	대	621	621	-	621	한국광해광업공단	
3	고한읍 고한리	21	잡	6,268	6,196	-	6,196	한국광해광업공단	
4	고한읍 고한리	274-4	천	13,132	102	-	102	국(환경부)	
5	고한읍 고한리	산1-160	임	3,059,675	10,309	증) 1,230	11,539	국(산림청)	
6	고한읍 고한리	산216-1	임	6,936,478	414	-	414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말사정암사	
합 계				10,021,851	19,703	증) 1,230	20,933		

정선군 공고 제2023-845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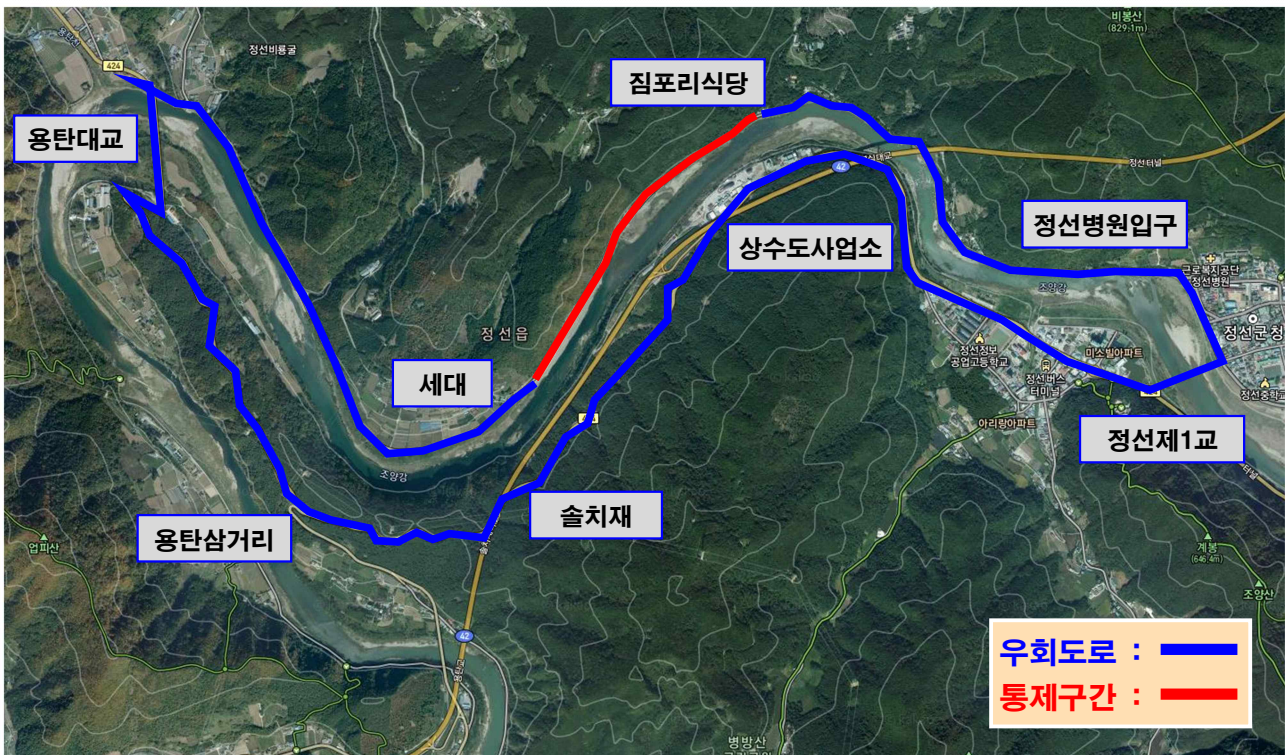
2023년 7 월 7일

정 선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3호선(세대)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차량	구간	정선읍 봉양리 487 ~ 봉양리 863-5
기간	2023년 7월 7일부터 ~ 별도 통지(위험요소 해제시 까지)		
이유			
군도3호선(세대) 세대터널 인근 사면의 빈번한 낙석으로 안전사고 우려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 김포리식당~정선병원입구~정선제1교~상하수도사업소~솔치재~용탄삼거리 ~용탄대교~세대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붙임. 통행 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1. 도로의 종류 : 군도3호선
2. 제한 구간 : 정선군 봉양리 487~ 봉양리 863-5
3. 대상 차량 : 전차량
4. 제한기간(시간) : 2023년 7월 7일 ~ 별도 통지(위험요소 해제시 까지)
5. 이유 : 군도3호(세대) 세대터널 인근 사면의 빈번한 낙석으로 안전사고 우려
6. 우회노선 : 집포리식당 ~ 정선병원입구~정선제1교~상하수도사업소~솔치재~용탄삼거리~용탄대교~세대
7. 우회노선도



정선군 공고 제2023-856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무릉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무릉2지구, 무릉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시 행 자 : 정선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무릉2지구 : 238필지 / 96,430.7m²
 - 무릉3지구 : 462필지 / 699,680.1m²
4. 지적확정 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23. 7. 11. ~ 2023. 7. 25.(15일간)
6. 공람장소 : 정선군청 행정국 민원과(지적재조사팀)
7. 공람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정선군 공고 제2023-858호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정선군 공고 제2022-1506(2022.12.30.)호로 공람·공고한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정선 군계획위원회 자문 의견 반영 등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변경에 따른 주민 재공람
2. 위 치 : 정선군 행정구역 전역 A=1,219.72km²
3. 공람개요
 - 가. 2025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1차 공람	재공람(금회)
- 용도지역 결정(변경) 346건 -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4건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248건 -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339건 -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4건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249건 - 군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4.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6. 공람기간 : 2023. 7. 14. ~ 2023. 7. 28.(14일 이상)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재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3-859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정 선 군 수

1.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내용

가. 고한·사북 도시지역 제11호 어린이공원(동탄 어린이공원1)

· 군관리계획(공원)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공원	어린이 공원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1,540.0	-	1,540.0	강고 353호 (2013.09.13.)	

·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시설명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비 고
		시설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1,540.0	100.0	-	-	
시설소계		857.0	55.6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404.0	26.2			
휴양시설	쉼터	32.0	2.1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376.0	24.4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45.0	2.9			
녹지 및 기타	녹지	683.0	44.4			

나. 고한·사북 도시지역 제12호 어린이공원(동탄 어린이공원2)

· 군관리계획(공원)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공원	어린이 공원	사북읍 사북리 산153-32번지	1,715.0	-	1,715.0	강고 353호 (2013.09.13.)	

·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시설명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비 고
		시설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1,715.0	100.0	-	-	
시설소계		924.0	53.9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397.0	23.1			
휴양시설	쉼터	32.0	1.9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271.0	15.8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224.0	13.1			
녹지 및 기타	녹지	791.0	46.1			

다. 정선 도시지역 북실 제2소공원

· 군관리계획(공원)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	공원	소공원	정선읍 북실리 744-3번지	1,382.8	-	1,382.8	정고 82호 (2020.04.10.)	

·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시설명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비 고
		시설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1,382.8	100.0	-	-	
시설소계		275.0	19.9	-	-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250.0	18.1			
조경시설	디딤석, 파고라	-	-			
휴양시설	휴게쉼터, 긴의자	7.0	0.5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18.0	1.3			
공원관리시설	울타리	-	-			
녹지 및 기타	녹지	1,107.8	80.1			

2. 군관리계획 결정(안) 도서 : 열람장소 비치

3.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북읍 행정복지센터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7. 14. ~ 7. 28.(14일간)

5. 의견제출방법 :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열람장소 또는 전자우편(jninsoo@korea.kr)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도시계획팀(033-560-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3-875호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 조문 반영 (안 제2조제3호)
- 나.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조제1호)
- 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조제2호)
-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조제4호)
- 마.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삭제 (안 제2조제5호)
- 바.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4일(21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국 민원과
- 전 화 : 033 - 560 - 2251
- F A X : 033 - 560 - 2407
- E-mail : jeonhosun@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제목 “(지휘, 감독)”을 “(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를 “군수”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사무를 지휘·감독”으로, “시정명령등”을 “시정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3.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u>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u> <u>4.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u> <u>5.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u>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u>시정명령등</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u>지휘·감독</u>) ① <u>군수</u>----- ----- <u>사무를 지휘·감독</u>----- ----- ----- <u>시정명령 등</u> -----. ② ----- ---- <u>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u>----- -----.

관계법령 발췌

□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과기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3의2.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불능 처리해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887호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
-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항
- 「의료급여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항

3. 주요내용

-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8일(22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국 복지과
- 2) 전화: 033-560-2159
- 3) 팩스: 033-560-2588
- 4) E-mail : grace420@korea.kr
- 5)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u>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	
		-----	<u>2028년</u>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